

대전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가단20254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6. 11. 23.

판결 선고2016. 12.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861,598원과 그 중 171,861,574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C와 피고 B 사이의 2015. 5. 26.자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527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청구

가. 인정사실

-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2014. 3. 6. 신용보증원금 102,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3. 5.까지로 하는 제1신용보증약정을, 2014. 3. 6. 신용보증원금 68,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3. 5.까지로 하는 제2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1, 2신용보증약정상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원고는 위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3. 6. 소외 우리은행 산남동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함)에 보증번호 D, 보증금액 102,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5.까지로 하는 제1보증서를(이후 신용보증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보증기한이 2016. 3. 4.로 변경됨),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3. 6. 소외 은행에 보증번호 E, 보증금액 68,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5.까지로 하는 제2보증서를(이후 신용보증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보증기한이 2016. 3. 4.로 변경됨)각 발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제1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제2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각 대출을 받았으나 2015. 9. 2.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 3) 원고는 위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2015. 12. 29. 소외 은행에 171,935,016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103,161,010원+제2보증 대위변제금 68,774,006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B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후 제1보증에 대하여 73,442원을 회수하여 현재 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으로 103,087,568원이 남아 있으며, 이 사건 제1보증에 대하여 소외 은행에 103,161,010원을 대위변제한 후 73,442원의 회수로 인하여 제1보증 확정손해금 24원이 발생하였다.

4)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제1, 2보증의 대위변제일인 2015. 12. 29.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861,598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103,087,568원 + 제2보증 대위변제금 68,774,006원 + 제1보증 확정손해금 24원) 및 그 중 171,861,574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103,087,568원 + 제2보증 대위변제금 68,774,00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보증의 대위변제일인 2015. 12. 29.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6. 10. 1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피고 B는 피고 C와 혼인하기 전인 2012. 10. 4. 이 사건 부동산을 11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피고 C는 피고 B와 2012.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5. 4.경 B와 협의이혼하면서 2015. 5. 26.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받기로 하는 협의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9. 23. 접수 제73174호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피고 B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지천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실제 피담보채무액 50,000,000원)되어 있었고, 소외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48,000,000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 4) 피고 C와 협의이혼할 무렵, 피고 B는 소외 은행에 대하여 170,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와 지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5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임차인 F에 대한 48,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1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청주시, 지천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15. 12. 29.경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불과 1개월 여 이후인 2015. 9. 2. 실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B의 무자력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재산분할 당시, 피고 B는 약 378,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① 재산분할 당시 피고 B의 채무가 378,000,000원에 이르는 반면,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점, ② 피고 B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은 피고 C와의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재산분할 이후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와 혼인 이전에 피고 B가 취득한 특유재산인데다 피고 C와 피고 B의 혼인 기간은 만 3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C와 B가 거주한 곳도 아니므로 혼인 이후에도 특별히 피고

C가 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별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의 재산으로 하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위 피고들 사이의 재산분할로 상당한 범위는 피고 C가 적극재산에 대한 분할을 포기하고 소극재산에 대한 분할을 받지 않는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B는 이 사건 재산분할로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결국 피고 C와 B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차주희

별지